

**무배당e수술보장 대출상환
신용보험 II**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e수술보장 대출상환 신용보험 II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e수술보장 대출상환 신용보험 II

1형: 사망보장(3,000만원형)

2형: 사망보장(5,000만원형)

3형: 사망보장(10,000만원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1형: 사망보장(3,000만원형)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	10	년	10	년	37	63	36	70
-	15	년	15	년	34	59	33	65
-	20	년	20	년	30	60	30	60
-	25	년	25	년	27	55	27	55
-	30	년	30	년	24	50	24	50

2형: 사망보장(5,000만원형)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	10	년	10	년	40	66	41	70
-	15	년	15	년	37	62	39	65
-	20	년	20	년	34	60	35	60
-	25	년	25	년	31	55	33	55
-	30	년	30	년	28	50	30	50

3형: (사망보장(10,000만원형))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	10	년	10	년	44	68	48	70
-	15	년	15	년	41	63	45	65
-	20	년	20	년	38	60	42	60
-	25	년	25	년	34	55	39	55
-	30	년	30	년	31	50	36	50

나.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연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보험료의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하며, 선납할 때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이 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이 아닌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합니다.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계약체결시점과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8.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3. 기타

가. 회사는 상품명칭 앞뒤에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보험대리점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서 정한 사이버몰 포함)을 포함하여 일반채널로 합니다.
- (2) 판매채널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경우,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0%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 회사가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한 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채무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되어야 합니다.
- (2) 회사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신용제공기관(물품 또는 금전 등의 신용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신용제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제공 받는 채무자 집단의 채무액을 보증하는 기관)에 지급할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채무상당액 이내에서 십만 단위로 절사하여 계산한 금전채무액을 지급보험금으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예1) 보험가입금액 : 1억원

피보험자 사망당시 금전채무잔고액 : 57,253,200원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금전채무계약을 체결한 신용제공기관에 57,200,000원(십만 단위로 절사하여 계산한 금전채무액)을 지급하고, 사망보험금 1억원과의 차액인 42,800,000원은 신용제공기관 외에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위의 설명에서 사용된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3) 사망보험금이 채무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채무상당액 초과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채무상당액 초과액에 대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 (4) 이 계약에서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제1항 제4호, 제1항 제5호,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보험금에 대해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